

영등포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9.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72호로 2011년 9월 0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 행정정보의 공표(안 제6조)

-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안 제7조)

-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국민의 열람에 제공
-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과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영등포구 및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로 정함.

- 안 제3조에 “정보”, “공개”, “집행기관”, “총괄부서”, “처리부서”, “청구인”이란 무엇인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 함.
- 안 제5조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개여부를 개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도록 영등포구의 책무를 명문화 함.
- 안 제6조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구분되지 않은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사업,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는 구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하는 공포제도를 도입 함.
- 안 제7조에 주요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구민이 열람하도록 명문화 함.
-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 공개방법, 공개 여부 결정, 비용부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기 2년,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부합되며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